##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75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 박홍근·김남국·김두관

남인순 · 문정복 · 서영석

안민석·이동주·천준호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경우「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천법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 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배설물을 배출하더라도 소유주 등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법률 제 호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 휴식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3
<u>행위</u> <단서 신설>	행위. 다만, 「동물보호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
	치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
	<u>한다.</u>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